

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제 521 호
--------	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.
제 출 자 : 김 포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- 2004. 4. 19일자 기구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회의 시간 및 비용이 증가될 뿐만아니라
- 당연직 위원중 국장 및 국 주무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조율의 중복이 있고, 사업소의 의견은 배제됨에 따라,
- 시정 운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변경 코자함

주요골자

- 가. 당연직 위원을 4개국 국장, 4급소장 3명과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 위원을 구성
코자 함(안 제2조제3항)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김포시조례 제 호

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담당관 및 국주무과장”을 “4급 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·소장	기획담당관
	성명	홍중표
	담당	기획담당
	성명	조복영
	담당자	송천영
	성명·전화	(행정 2040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구성)</p> <p>①(생략) ②(생략)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 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무 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 시장이 위촉한다</p>	<p>제2조 (구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4급 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 ----- ----- ----- -----</p>